

학부모 안내서 ...

식별배치심사위원회(IPRC)

온타리오주 교육법(Education Act)에 따라 모든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배치심사위원회(Identification, Placement, and Review Committee - IPRC)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한 명은 학교장 또는 교육청 소속 감독관이어야 합니다. IPRC는 온타리오 주법(규정 제 181/98 호)에 의거한 공식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크지역교육청(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배우며, 몇몇 학생은 개별적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학부모 안내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을 IPRC가 어떤 방식으로 식별하고, 학부모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이며, 여러분의 참여가 자녀를 위한 좋은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떻게 유익한지 설명해드립니다.

IPRC 는:

- 해당 아동의 '특수성' 여부를 결정하고('특수 학생'이란 행동학적, 의사소통적, 지적, 신체적 또는 복합적 특수성 때문에 특수교육 프로그램 배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학생을 말함),
- 특수성의 범주 및 분야를 식별하고,
- 특수 학생으로 식별된 아동에 적합한 배치를 결정하고,
- 매 학년도에 한 번 이상 식별 및 배치를 재심사합니다.

IPRC 회의 전

학교장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유익하겠다는 담임교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당 아동을 IPRC에 의뢰합니다. 학부모 여러분이 자녀의 학교장에게 자녀를 IPRC에 의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요청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IPRC 회의 소집 여부를 알리는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에게는 IPRC 회의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이 초대장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IPRC 회의는 해당 아동의 학교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장은 IPRC 회의일로부터 최소한 10 일 전에 이 안내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IPR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당 아동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자원교사(Special Education Resource Teacher - SERT)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며, 그 골자는 해당 아동의 강점 및 필요에 적합한 배치에 관한 제안/권고입니다. 교육청 웹사이트 www.yrdsb.ca 에는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기술한 'A Communication Guide for Parents and Students(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소통 안내서)' 팸플릿이 올려져 있습니다.

IPRC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

- 자녀의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날짜 또는 시간을 잡으시오. 또는,
-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학교장에게 알리십시오. 학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여러분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알리고, 식별 및 배치에 관한 IPRC의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보내줍니다.

누가 IPRC 회의에 참석하나?

동 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학교장 또는 교육청 소속 감독관이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타 참석자:

- 해당 아동과 그 부모(적절할 경우 학생도 참석할 수 있으며 만 16 세 이상 학생은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 해당 아동의 학교장
-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 및 기타 지원 인력(특수교육 교직원, 교육청 지원 담당자, 추가적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대표자 등)
- 해당 아동 또는 그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대리인
- 통역(필요할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제공)

IPRC 는 어떤 정보를 고려하나?

IPR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은 모든 평가 결과에 관해 해당 학부모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 또는 요약 정보로 IPRC 위원장에게 제출된 해당 아동 관련 정보가 학부모에게도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학부모도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PRC 가 검토 및 고려하기를 바라는 정보가 있을 경우, IPR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에게 그러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IPRC 회의 중

IPRC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학부모가 자신과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IPRC 위원장이 회의의 목적을 요약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논의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 해당 아동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 해당 아동에 대한 교육적 평가를 고려하고,
- 해당 아동에 대한 보건 또는 심리학적 평가를 고려하고(필요할 경우),
-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을 면담하고(만 16 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허락에 따라),
-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해당 아동(만 16 세 이상)이 제출하는 정보를 검토하고,
- 해당 아동의 강점 및 필요에 관해 논의합니다.

동 위원회는 해당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제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 a) 해당 아동의 특수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온타리오주 교육부 규정에 따른 특수성의 범주(*로 표시) 및 정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행동
행동

*신체적
전맹 및 저시력
신체적 장애

*의사소통
자폐증
전농 & 저청력
학습장애
언어장애

*지적
발달장애
영재성
경도 지적 장애

*복합적 특수성

- b) 특수 아동으로 식별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배치':
- 간접 서비스(Indirect Service)가 제공되는 정규 학급

- 자원 지원(Resource Assistance)이 제공되는 정규 학급
- 퇴실 지원(Withdrawal Assistance)이 제공되는 정규 학급
- 부분통합(Partially Integrated) 지역사회학급(Community Class) 또는 학생지원서비스학급(Student Support Services Class)
- 완전독립형(Fully Self-Contained) 특수교육 학급

해당 아동이 적절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는 통학구역 내 지정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특수교육 배치가 필요하다고 동 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공되는 정규 학급에의 배치가 해당 아동의 필요에 가장 적합할지, 그러한 배치가 해당 학부모의 소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특수교육 학급 배치를 결정할 경우, IPRC는 결정서(Statement of Decision)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IPRC의 결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IPRC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IPRC의 식별 결정 - 해당 아동의 특수성 여부
- IPRC가 해당 아동을 특수 아동으로 식별했는지의 여부
 - o 특수성의 범주 및 정의(온타리오주 교육부 규정에 의거)
 - o 해당 아동의 강점 및 필요
- IPRC의 배치 결정(특수교육 학급 배치가 결정되었을 경우, 그 이유 명시)
-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권고안

해당 학부모는 IPRC의 '식별 및 배치' 결정에 동의한다는 증거로 IPRC 결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IPRC 회의 석상에서 바로 서명할 수도 있고, 결정서를 집에 가져가 다시 검토해본 다음 자녀의 학교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IPRC 회의 후

IPRC가 해당 아동을 특수 학생으로 식별했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IPRC의 그러한 식별 및 배치 결정에 동의했을 경우,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학교의 교장에게 해당 아동을 위한 개별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 - IEP) 개발의 필요성이 통보됩니다.

해당 아동을 위한 IEP는 담당 교직원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개발합니다. IEP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요
- 특수교육의 교육적 기대치
- 특수교육 교수 및 평가 전략, 인적 지원, 해당 아동이 학습하고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별화 도구 등과 관련된 필요한 조정
- 해당 아동의 학습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과목 또는 과정의 해당 학년 기대치를 수정하는, 교과과정의 필요한 수정(적용 학년의 수정, 또는 해당

학년의 일반적 교과과정 기대치의 수량 및 복잡성의 상향/하향 조정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습 진전 점검에 사용할 방법에 관한 설명
- 만 14 세 이상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취업, 고등교육, 지역사회 생활 등)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IEP 는 해당 아동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된 날짜로부터 30 일(학교 수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학교장은 IEP 사본, 안내 팸플릿, IEP 의 목적, 절차 및 내용을 설명하는 '학부모를 위한 IEP 안내서(IEP Guide for Parents)' 등이 해당 학부모에게 발송되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IPRC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IPRC 와의 2 차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PRC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후속 회의의 목적은 학부모의 우려 또는 해당 아동(만 16 세 이상일 경우)의 우려의 관점에서 IPRC 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2 차 회의는 요청이 접수된 후 되도록 속히 열립니다. 2 차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는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위원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학부모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PRC 는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기존의 결정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PRC 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IPRC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 또는 해당 아동(만 16 세 이상)은:

- 원래의 IPRC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요크지역교육청(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 60 Wellington St. W., Aurora, ON L4G 3H2) 교육청장/사무국장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제출하거나,
- 2 차 IPRC 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위 주소로 이의신청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의신청통지서에는 위의 둘 중 어느 IPRC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지 명시하고 이의 신청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구인가?

특수교육이의신청조정위원회(Special Education Appeal Board)는 해당 이의신청 사안에 개입한 적이 없는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요크지역교육청이 선임한 위원 1 명
- 학부모가 선임한 위원 1 명
- 다른 위원 2 명(또는, 이들 2 명의 위원이 위원장 선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타리오주 교육부의 해당 지역 감독관)이 선임한 위원장

이의신청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의신청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동 위원회는 IPRC 가 검토했던 자료를 받아 재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면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 및 아동(만 16 세 이상)도 회의에 초대되어 모든 논의에 참여합니다.

동 위원회는 3 일 이내에 권고안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 IPRC 의 결정에 동의하여 기존의 결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거나,
- IPRC 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아동의 식별, 배치 또는 둘 다에 관해 교육청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이 권고안과 그 이유를 학부모 및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이의신청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떻게 집행되나?

- 교육청은 이의신청조정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동 위원회의 권고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주의: 교육청은 이의신청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를 의무가 없음.)
- 학부모는 교육청에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특수교육심판위원회(Special Education Tribunal) 사무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이의신청조정위원회의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별 및 배치 재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당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 개월 후, 그 부모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IPRC 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원래의 식별 및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결정을 지속할지 다른 결정이 적합할지 결정합니다.

재심사 IPRC 회의는 매 학년도마다 열립니다.

- 해당 아동이 현재 지역사회학급(Community Class)에 배정되어 있거나 식별 또는 배치가 변경될 경우, 공식적인 IPRC 가 매년 열리며 해당 학부모에게 IPRC 초대장(Letter of Invitation)이 발송됩니다.
- 해당 아동이 현재 지역사회학급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현재의 식별 및 배치의 지속을 권고할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IPRC 식별및배치지속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of Continued IPRC Identification and Placement)'가 발송됩니다:
 - 공식적 IPRC 회의를 요청하거나
 - 현재의 식별 및 배치가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회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되나?

교육청은 모든 특수 학생을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옵션에는 수업 중 지원이 제공되는 정규 학급, 교수를 위한 퇴실이 허용되는 정규 학급, 특수교육 부분 통합 학급 등이 포함됩니다. 통합 기회는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학생 서비스(Student Services) 자원 교직원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교육청의 특수교육계획(Special Education Plan)을 읽어보십시오. 이 특수교육계획은 교육청 웹사이트 www.yrdsb.ca 에 올려져 있으며 학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아동의 학교장
-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 학생과(Student Services)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Centre for Leadership and Learning
300 Harry Walker Parkway South,
Newmarket, ON L3Y 8E2
(905) 727-0022 또는 (416) 969-7170 내선 3235

어떤 기관이 학부모를 도와줄 수 있나?

특수교육 아동의 부모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자문위원회(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 SEAC)와 제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살펴보십시오.

온타리오주 교육부의 주정부학교 및 시범학교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농아, 맹아, 농맹아, 중도 학습장애 아동, 그리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 관련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주정부학교 및 시범학교를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통학하기에는 집이 너무 먼 학생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기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도 학습장애 및 ADHD 관련 학습장애가 있는 영어 사용 학생을 위한 시범학교:

Sagonaska School
350 Dundas St. West
Belleville, ON K8P 1B2
전화: (613) 967-2830

Amethyst School
1090 Highbury Ave.
London, ON N5Y 4V9
전화: (519) 453-4408

Trillium School
347 Ontario St. South
Milton, ON L9T 3X9
전화: (905) 878-8428

농아 학교

Ernest C. Drury School
255 Ontario Street South
Milton, ON L9T 2M5
전화: (905) 878-2851
TTY: (905) 878-7195

Robarts School
1090 Highbury Avenue
PO Box 7360, Station E
London, ON N5Y 4V9
전화 및 TTY: (519) 453-4400

Sir James Whitney School
350 Dundas Str. West
Belleville, ON K8P 1B2
전화 및 TTY: (613) 967-2823

맹아 및 농맹아 학교

W. Ross Macdonald School
350 Brant Avenue
Brantford, ON N3T 3J9
전화: (519) 759-0730

농아 및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프랑스계 학교:

Centre Jules-Leger
281 rue Lanark
Ottawa, ON K1Z 6R8
전화: (613) 761-9300
TTY: (613) 761-9302 및 761-9304

요청할 경우 점자, 큰 활자 또는 오디오 카세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온타리오주 교육법(Education Act)에 따라,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은 저마다의 필요에 적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크지역은 법적 권한을 가진 교육청 소속 위원회인 특수교육자문위원회(SEAC)가 있습니다. 3 명의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AC 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권고안을 교육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학부모 및 후견인에게 정보,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의 목적과 사명:

-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예방적 접근법을 지원한다.
-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능력 부여 환경을 제공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완전한 서비스 제공 옵션을 제공한다.
-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자원 교직원을 제공한다.
- 학교 공동체 내의 유의미한 참여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통합 및 수용한다.
- 특수교육 자원 교직원과 일반 교직원 사이의 협력적 계획을 시행한다.
- 각종 협력 관계를 감독하고 수립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은 특수교육자문위원회(SEAC) 회의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SEAC 은 통상적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 시에 다음 장소에서 열립니다:

The Education Centre - Aurora
60 Wellington Street West, L4G 3H2
(Wellington 선상 Yonge Street 왼쪽)

회의 일정은 교육청 웹사이트 www.yrdsb.ca 에 게시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까?

SEAC 또는 교육청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Superintendent of Student Services
(416) 969-7170 또는 (905) 727-0022 내선 3235

Principals of Student Services
(416) 969-7170 또는 (905) 727-0022 내선 3219 및 3460

교육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yrdsb.ca

운영위원직에 관해 알아보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Lori Davenport, Administrative Assistant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905) 727-0022 내선 #2027, (905) 727-3053(팩스)
lori.davenport@yrdsb.ca

요크지역교육청 SEAC 위원 – 2015-2018 공개 명단

특정 SEAC 위원의 대리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Lori Davenport, Administrative Assistant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905) 727-0022 내선 2027, (905) 727-3053(팩스)
lori.davenport@yrdsb.ca

Association for Bright Children - York Region North
135 Brant Street, Oakville, ON L6K 2Z8
1-844-443-8332, www.abcontario.ca

Association for Bright Children - York Region South
135 Brant Street, Oakville, ON L6K 2Z8
1-844-443-8332, www.abcontario.ca

Autism Ontario - York Region Chapter
Loyal True Blue and Orange Home building
11181 Yonge Street #215, Richmond Hill, ON L4S 1L2
(905) 780-1590, www.autismontario.com/york

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615 Davis Drive, Suite 100, Newmarket, ON L3Y 2R2
(905) 898-6413, 1-800-563-0887, york@cnib.ca

Children's Treatment Network(CTN) of Simcoe York
13175 Yonge Street, Richmond Hill, ON L4E 0G6
(905) 954-4011, (905) 773-7090(팩스)
1-877-719-4795, www.ctn-simcoeyork.ca

Community Living Georgina
26943 Hwy. 48, P.O. Box 68, Sutton West, ON L0E 1R0
(905) 722-8947, (905) 722-9591(팩스)
www.communitylivinggeorgina.com

Community Living Newmarket/Aurora District
757 Bogart Avenue, Newmarket, ON L3Y 2A7
(905) 898-3000, (905) 773-6346 (토론토), (905) 898-6441(팩스)
www.clnad.com

Community Living York South
101 Edward Avenue, Richmond Hill, ON L4C 5E5
(905) 884-9110, (905) 737-3284(팩스)
www.communitylivingontario.ca

Down Syndrome Association of York Region
P.O. Box 2063, Station B, Richmond Hill, ON L4E 1A3
(416) 410-DOWN, 1-800-649-3639, www.dsayr.c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of York Region
The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
9275 Markham Road, Unit 15, Markham, ON L6E 1A3
(905) 762-1282, (905) 762-0107(팩스), www.york.ca

Easter Seals of Ontario
One Concorde Gate, Suite 700, Toronto, ON M3C 3N6
(416) 421-8377, 1-800-668-6252, (416) 696-1035(팩스)
www.easterseals.org

Learning Disabilities Association - York Region
11181 Yonge Street, Unit 221, Richmond Hill, ON L4S 1L2
(905) 884-7933 내선 #22, (905) 770-9377(팩스)
<http://ldyar.org>

Learning Disabilities Association - York Region North
11181 Yonge Street, Unit #221, Richmond Hill, ON L4S 1L2
(905) 884-7933 내선 #21, (905) 770-9377(팩스)
<http://ldyar.org>

VOICE for Hearing Impaired Children
P.O. Box 30045, Dundas Street West, Oakville, ON L6H 6Y3
(416) 487-7719, 1-866-779-5144, (416) 487-7423 (팩스)

www.voicefordeafkids.com

York Support Services Network
240 Edward Street, Unit 3, Aurora, ON L4G 3S9
1-866-275-9776, (905) 898-6455 내선 #2240
(905) 898-1171 (팩스), www.yssn.ca

직원 대표

Superintendent, Student Services
Kate Diakiw
(905) 727-0022 내선 #3235, kate.diakiw@yrdsb.ca

Superintendent,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Services
Heather Sears
(905) 727-0022 내선 #3419, heather.sears@yrdsb.ca

Principals, Student Services:

Jodi Sepkowski
(905) 727-0022 내선 #3219, jodi.sepkowski@yrdsb.ca
Wendy Swaine
(905)727-0022 내선 #3460, wendy.swaine@yrdsb.ca

Secondary Principal
Carmen Spiteri-Johnson
carmen.spiteri-johnson@yrdsb.ca

Elementary Principal
Kate Kurek
kate.kurek@yrdsb.ca

Administrative Assistant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Lori Davenport
(905) 727-0022 내선 #2027, (905) 727-3053(팩스)
lori.davenport@yrdsb.ca

주의: 운영위원 3 명 대표